

## ■ 최신 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 1. 개정 목적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2. 주요 내용

- 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책무가 부여됩니다. 법 제32조제4항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령에서도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책무를 지는 경우로서 '근로시간의 단축(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32조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시행령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할 것

- 나.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3.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2018. 7. 1.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8. 6. 19. 시행\)](#)